



장페이야오 VS 수저우 난신 시멘트 유한공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재산손해배상 분쟁 사건

05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건번호	(2000) 知终字 第3号
판결 일자	2000년 11월 06일	판결 결과	상소 일부 인용(침해금지청구부분 권리자 패, 손해배상청구 부분 권리자 승)
원심원고(상소인)	1. 장페이야오, 2. 후이더웨(상소 포기), 3. 장수성 푸닝현 먼지제거 설비공장		
원심피고(피상소인)	수저우 난신 시멘트 유한공사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법통칙 제153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180조		
영업비밀	수직 가마 습식 먼지 제거기 생산 기술(먼지제거기 노즐의 재질 및 게이트 리프터, 전기통제장치의 기술적 특징, 고액분리장치의 치수 등의 기술비밀) 관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商业秘密), 비밀보호 조치(保密措施), 경영정보经营信息, 특별수권(特别授权), 강제 집행(强制执行)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장폐이야오가 운영하는 장수성 푸닝현 먼지제거 설비공장(이하 '푸닝 먼지제거 공장')과 원심 피고 수저우 '난신시멘트 유한공사(이하 '난신 시멘트 공사')'는 1996년 LZ-2형 수직가마 습식 먼지 제거기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 계약에는, 만약 수직가마 습식 먼지 제거기의 배출농도가 150mg / Nm³ 이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 수직가마 습식 먼지 제거기는 150mg / Nm³ 이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금 지불 없이 계약이 실효되었다.

1998년 장수성 환경보호 위원회와 수저우시 경제위원회는 난신 시멘트 공사를 2000년도 대기오염 배출량 표준도달 주요 기업명단에 포함시킨다는 문서를 보냈고, 난신 시멘트 공사는 수직가마 습식 먼지 제거기의 철거를 위해 푸닝 먼지 제거 공장에 철거를 요청하였다. 또한, 푸닝 먼지제거 공장이 요청 기한 내 철거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임의로 철거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장폐이야오와 후이더웨, 그리고 푸닝 먼지제거 공장은 난신 시멘트 공장이 먼지 제거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먼지 제거기를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상소하게 되었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	원심 피고(피상소인)
해당 먼지 제거기에는 상업비밀이 존재한다.			푸닝 먼지 제거 공장은 아무런 비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난신 시멘트 공사는 푸닝 먼지 제거 공장의 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푸닝 먼지 제거 공장의 기술은 이미 《시멘트 기술》이라는 잡지에 공개되었으므로, 대중에 알려진 기술이다.
먼지 제거기의 자체 철거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난신 시멘트 공사의 먼지 제거기 철거 행위는 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 배상의 요청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

04 판결 요지

푸닝 먼지 제거 공장은 먼지 제거기가 기술비밀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난신 시멘트 공장이 해당 정보를 이해하거나 대외적으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때문에 본 사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밀보호 조치가 없다고 보고, 본 판결은 상업비밀 침해에 근거한 청구를 인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신 시멘트 공장이 먼지 제거기를 자체 철거하였고, 보관의 책임을 지지 못했으며, 부분 설비의 파손과 유실을 초래하였다. 이는 푸닝 먼지 제거 공장 재산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며, 손실된 재산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은 인정하였다.

05 Key Point

당초 먼지 제거기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계약내용에는 먼지 제거기에 기술비밀이 포함되어있다고 쓰여 있지 않았고, 또 다른 비밀보호 책임 조항도 없다. 또한, 원심 원고들은 계약서에 먼지 제거기를 '중국 특허제품'이라고 기록한 것이 비밀보호 조치라고 주장하였는데, 본 판결은 '중국 특허제품'이라고 명기한 것만으로는 비밀보호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 상업비밀 판례들이 상업비밀의 요건으로 '비밀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밀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계약서 및 규정 등에 있어서 '비밀 보호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 등 경영행위를 하거나, 관련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 내부에 비밀보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고용계약서 및 거래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비밀보호 의무 조항 및 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 조항이 삽입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